북방농업연구소 규정

제정 2000. 9. 21.
제1차 개정 2006. 12. 4.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 본 연구소는 상지대학교 부설 북방농업연구소(이하"연구소"라 한다)라 하며, 영문표기는 Institute for Northern part of Korean peninsula로 한다.
(조 개정 2006.12.4)

제2조(목적) 본 연구소는 북방농업의 조사연구 및 이론개발과 남북간 농업교류 활성화를 위한 학술연구와 실천방안을 수립·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소재) 본 연구소는 상지대학교내에 둔다.

제4조(사업) 본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1. 북한, 중국, 러시아를 포함한 북방농업분야의 제 문제에 관한 조사 및 연구
2. 남북간 농업분야 제도 개선 연구
3. 남북간 농업분야 학술 교류 및 공동 연구
4. 각종 북방농업 자료 수집, 분석 및 부정기 간행물 출판
5. 관련 연구기관 및 관련 학회와의 교류
6. 외부 위탁 용역 수행
7. 연구발표회 및 학술 토론회
8. 북방농업 관련 업무 자문 및 공동 투자
9. 기타 연구소 목적과 관련된 사업

(조 개정 2006.12.4)

제2장 조직

(개정 2006.12.4)

제5조 삭제 (2006.12.4)

제6조(연구소장) ① 연구소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면한다. (개정 2006.12.4)
②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. (개정 2006.12.4)
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 (개정 2006.12.4)

제7조(운영위원회) ① 본 연구소에는 연구원의 임면, 연구업무,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,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 (개정 2006.12.4)
② 운영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 (개정 2006.12.4)
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 (신설 2006.12.4)
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수는 연구소장을 포함하여 5~7명으로 하며, 동일학과 교수가 과반수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(신설 2006.12.4)

(조 개정 2006.12.4)

제8조(간사) 본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간사를 두되, 연구소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별도의 사무직원을 임면할 수 있다.
② 삭제 (2006.12.4)
(조 개정 2006.12.4)

제9조(연구원 등) 연구원 등 임용에 고나한 사항은 연구교수·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.
② 삭제 (2006.12.4)
(조 개정 2006.12.4)

제10조(고문) 본 연구소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.

제11조(연구보조원) 연구원의 업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, 연구소장이 임면한다.
(조 개정 2006.12.4)

제3장 회의

제12조(회의) ① 삭제 (2006.12.4)
② 연구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의장이 된다.
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. (개정 2006.12.4)
④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의 개정과 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된다. (신설 2006.12.4)
(조 개정 2006.12.4)

제4장 재정

제13조(재정) 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1. 교내·외 수탁 연구비
2. 외부기관 및 본 대학의 지원금과 기부금
3. 본 연구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타 수입

제14조(회계연도 및 예·결산) ①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이한다.
② 매 회계연도의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.

제5장 보칙
(신설 2006.12.4)

제15조(규정 개정 및 해산) ① 본 연구소의 규정 개정 및 해산은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다.
② 연구소가 해산되는 경우에 그 재산은 상지대학교에 귀속된다.
(조 신설 2006.12.4)

제16조(준용)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교수·연구원임용규정 및 부설연구소(원)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.
(조 신설 2006.12.4)

제17조(지침 등) 연구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.
(조 신설 2006.12.4)

부칙
이 규정은 2000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1143 2006.12.4)

이 규정은 2006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.